
창조경제 생태계 강화를 위한
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

2016. 4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. 추진배경 및 경과	1
II. 그동안의 노력	2
III. 기술유출 실태와 원인분석	3
IV. 기술보호 비전과 추진전략	6
V. 추진과제	7
1. 법·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	7
2. 신고 활성화 및 기술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	12
3.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강화	16
4.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 활동 여건 조성	18

I. 추진배경 및 경과

◆ “일부기업들이 산하 연구기관이나 하도급 협력업체, 피고용인의 지식 재산에 대해 제 값을 주지 않고 오히려 탈취하려는 행태까지 보여...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” (MP, '13.3.25, 산업부·중기청·특허청 업무보고 청취시)

□ 추진배경

- 총리께서 「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」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정부대책 강구 발표 ('16.1.12)
- 그간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·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,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*

*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: ('10) 45.7점 → ('12) 34.9점 → ('14) 45.6점으로 여전히 '취약'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(100점 만점, '15. 중기청)

- 경제 글로벌화에 따라 해외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필요성 증가

*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지재권 무역수지 30억\$ 흑자

** 중소·중견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 지속 증가('10년 0.9억\$→'14년 10억\$) ('15, 한국은행)

□ 추진경과

- 국조실 국무1차장 주관, 지재위 및 관계부처* 실장급이 참여하는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」구성 및 회의 개최 ('16.1.21, 3.30)

* 법무부·산업부·미래부·공정위·국정원·특허청·중기청·경찰청

- 「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」를 지원하기 위한 「실무대책반(산업통상미래정책관 주재)」구성 및 4차*에 걸친 관계부처 회의 진행

※ 지재위 전문위원회 토의 (3.9), 기업간담회 3회(3.11, 3.22, 3.23)

⇒ 기술유출 사례를 촘촘하게 유형화하고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, 수요자(중소기업)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의 종합대책 마련

II. 그동안의 노력

□ 기술유출 규제관련 법률 제·개정

- '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' 제정(산업부, '07.4월)
 -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해외수출시 사전승인 제도 등 도입
 - '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' 개정(특허청, '13.7월)
 - 영업비밀 해외유출 징역형량 강화 (7년→10년)
 - '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' 제정(중기청, '14.11월 시행)
 -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·중재위 설치, 기술보호 전담지원기관 지정 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) 등
 - '민사소송법' 및 '법원조직법' 개정(법무부, '15.11월)
 - 특허침해 민사소송 관할집중 ('16.1월 시행)
 - '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' 개정 (산업부, '16.3월)
 -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량 강화 등
- ※ (해외유출) 10억이하 벌금 / 10년이하 징역 → 15억이하 벌금 / 15년이하 징역,
(국내유출) 5억이하 벌금 / 5년이하 징역 → 7억이하 벌금 / 7년이하 징역

□ 국내·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

-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 출범(중기청, '16.1월), 해외 IP-DESK설치·상담(특허청)
- 기술유출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간 업무협약 체결('14.12월) 및 산업보안정책협의회 운영('10.7월)을 통한 부처간 협업 추진

□ 기술보호 인프라 구축 지원

- 기술개발 사실 입증을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('08) 및 전자문서 원본증명서비스('10) 도입·운영
- 온라인 기술유출 및 사이버 공격 대비 보안관제 서비스('11~'15년, 5,014개사 지원) 및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등 지원 ('13~'15년, 97개사)
- 소송보험 정착을 위한 보험료 지원('10~'15년, 415개사 지원)

Ⅲ. 기술유출 실태와 원인분석

가. 기술유출 실태

□ 불법적인 기술탈취

- (유형 ①) 내부자(전·현직 임직원)에 의한 기술탈취
 - (사례) 의료기기 제조업체 A사의 연구소장이 퇴사후 경쟁업체 B사의 기술자문으로 활동하면서 B사에서 유사제품 출시
 - (원인분석/정책방향) 기술인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보상 부재
 - ➔ 보안관리 노력 강화 및 경업금지약정 체결 활성화, 보상체계 보완
- (유형 ②) 외부자(협력업체 및 경쟁업체 등)에 의한 기술탈취
 - (사례) 디스플레이 검사장비업체 O사의 직원이 국내 S사와 L사의 AM-OLED기술을 USB에 담아 유출하여 해외 경쟁업체로 유출
 - (원인분석/정책방향) 협력업체의 취약한 보안 의식 및 수준
 - ➔ 협력업체의 보안관리 강화 및 보안수준 제고 지원

□ 거래과정에서의 기술유출

- (유형 ③)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기술유출
 - (사례) 대기업 L사가 배터리라벨 제조 중소기업 S사에 대한 품질관리 명목으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, 취득한 기술로 중국 자체 생산에 유용
 - (원인분석/정책방향) 갑을관계 관행으로 하도급업자의 법적 권리행사 곤란
 - ➔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적발·감시 강화
- (유형 ④) 공동연구 과정에서의 기술유출
 - (사례) 교수 K씨가 지하철 광고시스템 개발 중소기업 A사와 센서기술 공동연구를 통해 취득한 신기술을 동의없이 개인명의로 특허 등록

- (원인분석/정책방향) 비밀유지 약정 미체결 및 공유기술 범위 명시 미흡
 - ➔ 비밀유지약정 보편화, 권리자의 신속한 권리회복제도 도입
- (유형 ⑤) 기술자문 과정에서의 기술유출
 - (사례) 기술닥터 P가 개발업체 B사의 기술자문과정에서 취득한 부품 세척기 신기술을 B사 몰래 특허 출원한 뒤 미국 환경회사에 유출
 - (원인분석/정책방향) 인식부족 및 비밀유지 약정 미체결
 - ➔ 표준계약서(비밀유지약정 포함) 보급, 기술관리 가이드라인 보급
- (유형 ⑥) 사업제안 과정에서의 기술유출
 - (사례)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C사가 업무제휴를 위해 M사에 기획서 및 핵심자료를 제공하였으나, 협의없이 C사의 유사게임을 해외에서 출시
 - (원인분석/정책방향) 계약체결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보호 인식부족
 - ➔ 비밀유지약정 체결 및 제공된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
- (유형 ⑦) M&A 과정에서의 기술유출
 - (사례) 상하이 자동차가 쌍용차 인수 후 고용유지와 신차개발 투자를 약속. 그러나 구조조정 실시 및 투자약속 불이행, 완성차 생산기술과 하이브리드 관련기술 등을 유출하고'09년 법정관리 신청 후 철수
 - (원인분석/정책방향) 외국투자 위축 우려로 소극적 규제
 - ➔ M&A시 신고대상 확대 검토 (현재, 국가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M&A의 경우로 한정)
- (유형 ⑧) 기술수출 과정에서의 기술유출
 - (사례)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 및 M&A추진시 고의로 행정절차를 회피 또는 관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사전 미신고·승인상태에서 수출
 - (원인분석/정책방향) 기업의 제도 인지 부족
 - 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제도 안내 강화

나. 원인분석

□ 제도적 측면

- 기술유출 사건 및 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전문인력 부족
- 사건처리 및 사후구제의 장기화*와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결 의지 약화 등 악순환

* 영업비밀 실태조사('13년, 특허청): 민사소송 소요기간 2년 이상 23.1%

- 기술유출에 대한 증거확보 및 입증책임 부담, 기대 손해배상액 미흡 등으로 고소·고발에 소극적

□ 기술 탈취/유출자 측면

-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free rider 심리 내재
- 기술유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벌금 등 형사적 제재가 매우 낮은 수준
- 공공기관이 예산절감 목적으로 납품업체의 기술을 침해

* (예시) ○○사는 A사가 개발·특허등록한 체력측정용 S/W를 납품받아 사용('12년~)하다가 '15.1월 서비스 사용을 중지하고 C사에게 유사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납품받아 사용함

□ 기술 소유자 측면

- 기술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 및 관심 부족
- 예산상의 이유로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인력·시스템 미흡

* 중소기업의 기술보안 담당인력은 평균 2.7명, 대기업은 평균 8.4명

- 직무발명보상 등 기술인력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

*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율은 '15년 기준 55.6%에 불과 (발명진흥협회)

⇒ 新 IT환경, 기업간 기술거래 및 해외진출 증가 등으로 기술유출 손실우려가 크고 방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정책 강화 필요

IV. 기술보호 비전과 추진전략

비 전

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강화

정책 추진 방향

사전 예방의
실효성 제고

사후 대응의
신속성 확보

정부 지원체계의
효율성 제고

기업 보호활동의
자율성 강화

4대 핵심전략 · 13개 추진과제

① 법·제도 정비를
통한 권리 보호 및
처벌 강화

- 1-1.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장치 강화
- 1-2. 특허 권리화 신속지원 및 권리회복절차 간소화
- 1-3. 재판의 신속성 확보
- 1-4. 소송 前, 신속구제 절차 강화

② 신고 활성화 및
기술 분쟁의 신속한
처리 지원

- 2-1. 상담과 신고를 연계한 초동대응 강화
- 2-2. 기술유출 범죄수사 전문성 강화
- 2-3. 하도급 거래상 기술자료 부당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

③ 해외진출 중소기업
기술보호 강화

- 3-1. '국가핵심기술'의 해외 유출 방지
- 3-2.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교육·현지보호 확대

④ 중소기업의 자율적
기술 보호활동 여건
조성

- 4-1.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
- 4-2. 핵심기술 인력 확보·유지환경 강화
- 4-3. 중소기업인의 보안의식 제고
- 4-4.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 대비 보험 지원 확대

V. 추진과제

1. 법·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

(1-1) 영업비밀 등 법적 보호장치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영업비밀 유출·보유 등에 대해 처벌을 못하는 사례 발생과,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지력이 낮은 실정
- 영업비밀 특성상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소송을 포기하는 경향이 높고, 유출로 인한 손해액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*이 미흡

* 손해배상 평균 인용금액/청구금액 : 18.5% (2.4억원/13억원) ('13. 특허청)

- 중소기업이 유행 주기가 짧은 상품의 디자인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, 대기업이 해당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사례* 다수 발생

* E기업이 창업 4년차 중소기업의 머플러를 그대로 베껴서 1/3 가격에 판매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초래 및 명성에 큰 타격('15.11, KBS)

-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미흡

<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(대법원 양형위원회) >

구분	법정형	감경	기본	가중
국내 침해	5년	- 10월	8월 - 1년 6월	1년 - 3년
국외 침해	10년	10월 - 1년 6월	1년 - 3년	2년 - 5년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영업비밀 보호요건 강화) 영업비밀 구성요건을 **완화***하고, 형사 처벌대상에 4가지 유형**을 추가

* '합리적 노력'이 없더라도 '비밀로 유지'된 것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

※ 현재는 부정법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**손해를 입힐** 목적 등으로 **영업비밀을 취득·사용** 또는 제3자에게 **누설**하는 경우만을 처벌

** ① 정당한 권한을 넘는 영업비밀 유출·보유, ② 절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, ③ 불법유출 영업비밀 재취득 또는 사용 ④권한소멸후 삭제·반환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경우

- (미등록디자인 보호강화) 미등록 디자인의 무분별한 도용 방지를 위해 상품형태 **모방행위**를 **형사처벌**

※ 현재는 해당상품 판매금지청구,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

- (영업비밀 침해 처벌 강화) 벌금 **상한액 상향*** 및 악의적 침해에 대한 **징벌적 손해배상**** 도입

* (국외) 1억원→10억원, (국내) 5천만원→5억원

** 하도급법은 3배 이내로 도입 ('11년) → 입법곤란시 대안으로 **필요적 몰수추징** 규정 도입

- (양형기준 강화) 대검 공판송무부·유관부처와 협의, 기술유출 범죄 **선고형**에 관한 **선진국 자료**를 비교·분석하여 양형위원회에 제시('16/3분기)

* 신속재판 및 양형기준 강화방안을 대법원에 건의 (법무부·지재위)

-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검찰 **구형기준 강화** ('16/2분기)

- (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 강화) 일정한 조건하에 영업비밀이라도 **증거 제출의무 부과**, **불응시 제재효*** 도입을 통한 실손해 보전

* 예시) 침해자의 매출이익률이 기재된 장부에 대한 제출명령에 불응시, 권리자가 주장하는 이익률을 그대로 인정하여 손해액 산정 가능

(1-2) 특허 권리화 신속지원 및 권리 회복절차 간소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이 컨설팅, 투자유치, 업무 제휴 등을 위해 공개한 아이디어를 탈취·도용당하는 사례가 증가
- 상대방이 기술거래·상담·공동연구시 불법으로 특허받는 경우,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절차가 복잡*
 - * (공동연구의 경우) 해당권리를 무효시킬 수 있을 뿐 권리회복은 불가
(기술거래·상담의 경우)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.
- 특허침해 소송시, 상대방이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증거제출을 거부하는 사례 다수 발생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특허권 조기 획득 지원) 핵심기술을 조기에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 확대*
 - * 벤처기업, 이노비즈 인증기업 → VC, 엔젤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
- (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신설) 특허청의 무효처리, 신규 출원절차 없이 법원청구만으로 해당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절차 신설('17.3월)
- (특허소송 증거 확대 및 제출의무 강화) 증거대상을 '서류'에서 '자료'로 확대(서류이외의 디지털 증거 등도 포함)하고, 일정한 조건하에 영업비밀이라도 증거 제출의무 부과('16.6월)

(1-3) 재판의 신속성 확보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 최소화와 빠른 구제를 위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재판이 필요

* 특허 민사재판의 관할집중 시행중('16.1월)

- 소송 제기 前, 권리침해 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 제도*가 있으나, 다른 종류의 가처분에 비해 장시간 소요 (통상 1년)

* 특허법, 부정법,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각각에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이 규정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신속재판 도입)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'집중심리제' 도입을 법원에 건의

- 신속 재판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특허침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

- (가처분의 적시성 확보) 기술유출 사건처리 지연은 기술적 쟁점 검토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원인이 가장 크므로,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전문인력 지원

※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 정원 증원 신속 추진 (법원행정처)

- 아울러, 기술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법원행정처 협조하에 제도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가처분 사건 '처리기한의 법정화' 추진

* 중국 특허법 제66조 가처분 처리기한을 2일, 필요시 2일 연장하도록 명문화

- (가처분 이용시 부담 사전경감) 지식재산보호원이 기술사건 공공감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가처분 제도 활용부담*을 완화

* 가처분 인용 후, 본안소송 패소시 신청기업은 상대방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있음

(1-4) 소송 前, 신속구제 절차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3개 부처가 기술 관련 분쟁에 대해 유사·중복적인 조정위원회*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, 정책수요자인 중소기업의 혼란 야기

* ①산업기술분쟁조정위(산업부, 산업기술유출방지법), ②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(특허청, 발명진흥법), ③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·중재위(중기청, 중소기업보호지원법),

- 피해 중소기업은 시간·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, 피신청 기업에 응소의무가 없어 활용률 저조

* '15년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 : 산업부 3회, 중기청 16회, 특허청 10회

- Start-up 기업 등의 특허심판 및 소송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특허권의 적기 보호가 미흡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부처별 조정위원회 운영효율화)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합사무국을 공동운영 (산업부·중기청·특허청)

- 각 조정위원회들에 대해서 효율적 역할 분담체계 구축방안 수립

- (피신청인 성실 응소 의무화) 우선,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응소권고 조항 신설(공정위)하고 관계법령에 성실응소 의무 조항 신설

- (시정권고*기능 강화) 상표권 침해 등에만 있는 시정권고 조치를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에 대해서도 적용 (중기청)

* 피해 접수→ 침해여부 등 조사(필요시 지식재산보호원에 협조 요청)→ 전문가 심의→ 중기청장 조치

- (특허심판 신속화) Start-up기업, 1인 창조기업 등이 심판당사자인 심판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**Fast-track*** 제도 운영 (특허청)

* 서면공방을 최소화하고, 구술심리 활용을 통해 3개월 내 종결 (통상 8~10개월 소요)

2. 신고 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

(2-1) 상담과 신고를 연계한 초동대응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부처별 운영*으로 혼선이 야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를 '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'로 집중('16.1월 개소, 중기청)
 - * 영업비밀 보호센터(특허청), 산업기술 해피콜센터(산업부),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(중기청)
- 그러나 기술유출 사고 발생시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·신고접수·조사 등 초동대응이 미흡하여 피해 최소화 곤란
 -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, 수사의뢰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'신고'기능 추가) 신고 활성화를 위해 '(가칭)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·신고 센터'로 기능 확대 (중기청)
 - 센터의 배치인력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상담이외에 신고·제보 접수 기능을 추가하여 조사 및 수사 초기단계도 지원
 - 센터와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전담팀간 핫라인을 신설하여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- (인터넷 신고 강화) 「기술보호 울타리(www.ultari.go.kr)」에 '신고·제보란'을 신설하여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전담팀과 연결(중기청)
-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의 기술 유용에 대한 신고 활성화 (공정위)
 - 통합상담·신고센터에서 신고 포상금 지급('16.1월 도입) 적극 안내

(2-2) 기술유출 범죄수사 전문성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경찰) 8개 지방청*에 산업기술유출수사 전담팀(10개팀 38명) 운영
 - * 국제범죄수사대가 설치된 13개 지방청 중, 서울·경기·부산·대구·인천·울산·충북·경남
 - 산기팀 미설치 지역은 일반 외사수사팀 또는 경찰서 경제수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
- (검찰) 대전지검을 '특허범죄 중점검찰청'으로 지정('15.11월)하고, 지재권 공인전문검사(7명)을 일선 검찰청에 배치
 - 확대되는 수사 수요에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
- (지식재산보호원) 특허청 등의 기술침해 단속업무를 지원해 왔으나,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기술보호 업무 수행에 한계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경찰) 17개 소 지방청에 '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'을 구성하고 수요가 많은 지방청에 전문 수사 인력을 증강 배치 ('17년 상반기)
- (검찰) 변리사 등 특허수사 자문관을 채용(3명, '16년 상반기)하고 특허침해 형사사건 관할집중 및 전담수사체계 구축
- (지식재산보호원 권한 강화) 침해수사 및 단속사무 지원, 기술침해 공공감정 등 기능확대와 법적지위 확보 ('16.4분기)

※ 문체부 산하 한국저작권보호원('16.9월 출범)의 경우 저작권법 개정('16.3)으로 침해수사 및 단속사무 지원, 시정명령 여부 심의, 시정권고 조치권한 등 부여

(2-3) 하도급 거래상 기술자료 부당 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·유용하는 행위를 방지*하기 위해 제재수단** 도입('10.1월)

* 원칙적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, 사전서면발급 의무화, 기술유용 금지

** 기술유용시 3배 손해배상, 법 위반시 시정명령 및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과징금, 고발에 의한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가능

- 하도급거래의 속성상 기술유용 관련 신고가 많지 않은 실정

※ 기술유용 관련하여 종결 처리된 사건 12건 중 6건이 신고 취하로 인해 사건 종결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집중조사 등)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,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('16년 상반기)

- 상반기 조사 과정에서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난 업체를 선별하여 기술 유용여부 집중조사 ('16년 하반기)

- (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) 기술유용 관련 현장 직권조사와 관련, 경찰청 및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 ('16년 하반기)

3.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호 강화

(3-1) '국가핵심기술'의 해외유출 방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가 안보·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'국가핵심기술'이 해외로 무단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, 기술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핵심기술의 탄력적 발굴·변경·해제 필요
- '국가핵심기술'보유 기업은 유통·거래 제한만 있고 인센티브가 없어 기술보호 유인 부족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선제적인 '국가핵심기술' 관리) 수요조사·기술동향 조사 등을 매년 정례화하여 국가핵심기술 지정시, 기술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 ('16년 하반기)
 - 로봇,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를 적극 발굴·반영
 - 반도체·디스플레이와 최근 구조조정 진행업종(조선, 철강 등) 중심으로 해외유출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('16년 하반기)
- (인센티브 지원)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하여, 확인된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* 부여 추진 ('16년 하반기)

* (예시) 보안진단·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 우선 지원

- (M&A신고대상 확대 검토) 국가R&D 지원대상 핵심기술의 해외 M&A에 국한된 신고대상 기술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('16년 하반기)

(3-2)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교육·현지보호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,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술유출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
- 해외 현지에서의 지적권 분쟁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, 중소기업의 대응 능력은 취약

※ 우리 중소기업의 지적권 전담인력 보유율은 15%에 불과 (중소기업 2.1명)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해외진출 사전교육) 해외진출 예정기업 및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대상, 지적권 분쟁예방/대응전략 교육 실시 (특허청)

※ 서울, 부산, 광주 등 권역별로 총 17회 실시 예정 (16)

- (해외 IP-DESK 확대) 신규진출법인수·교역량·분쟁빈도 등을 고려하여 IP-DESK를 확대*,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지원 강화

* (현재) 중국·미국·일본·태국·베트남·독일에 설치

- (소송보험 가입 지원) 국제 지적권 분쟁예방 컨설팅, K 브랜드 보호사업 등 대상 기업들은 해외 소송보험료 가입지원 우대

4.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보호 활동 여건 조성

(4-1)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사이버 해킹, IT기술을 이용한 침해 및 기술유출 문제 심각
 - 6만 여건 악성코드 감염(월 평균)과 1,290여건의 해킹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이버 위협이 지속적 증가 추세
 - 기업 내부자의 휴대용 저장장치를 활용한 기술유출도 적지 않은 실정
- ※ 기업내부의 기술유출 유형 : '복사 및 절취'(42.1%), '핵심인력 스카우트/매수'(36.0%), '휴대용 저장장치'(36.0%) 순
- '15.5월 범정부적 사이버 보안 강화대책*을 수립·시행중이나 중소기업 비용부담 및 인력부족 등으로 관련 대처 미흡
 - * 사이버 보안인력 양성 및 전담인력 확충, 핵심기술 개발 등 보안산업 육성, 사이버안보 관련 법·제도 개선 등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관제서비스 확대) 근로자 100인 미만의 희망 중소기업*에 대해 '보안 관제 서비스' 보급 (중기청)
 - * 민간보안관제 시장규모('15) : 1,579억원 (이중 100인 이상 기업이 1,502억원 차지)
- (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)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활동 지원을 위해 지자체·지역 유관기관과 연계된 '정보보호지원센터*' 확대(미래부)
 - * 현재 5개 센터(인천·대구·호남·중부·동남지역) → 내년까지 경기 등에 추가 구축

(4-2) 핵심기술인력 확보·유지 환경 강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하여 핵심기술인력 유출에 취약*

*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수단 중 '핵심인력 스카우트', '관계자 매수'가 47% 차지('14. 중기청)

- 경업금지 약정에 대한 가이드 라인*을 배포한 바 있으나, 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등 기초자료 제공에 그침

* '꼭 알아야 할 영업비밀 보호가이드'('14.2월), '인력관리 지원가이드'('15.12월)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직무발명 제도 확산) 기업규모·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'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' 마련과 적극 홍보(특허청, '16년 하반기)
 - 중소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 제고('15년 46%→'17년 목표 : 60%)
- (경업금지 표준 매뉴얼 등 보급) 중소기업에 특화된 산업별(제조업, 서비스업 등) 표준 매뉴얼 및 계약서 제작·보급(특허청, '16년 하반기)
- (핵심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강화) 중소기업 고급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「내일채움공제*」 지원 강화 (중기청)

* 현행 : (기업) 기업부담액에 대해 비용처리 인정 및 세액공제 25%
(근로자) 공제기금 만기 수령액 중 회사부담금 부분에 대해 근로소득세 50% 감면

* 확대 : (근로자) 핵심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 부담금도 소득공제
(연간 300만원 한도)

- (인력의 부당 유인·채용 판단요건 완화) 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위법성 기준 완화 (공정위)

※ (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) '인력의 부당유인·채용' 정의 :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·채용하여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

(4-3) 중소기업인의 보안의식 제고

- 중소기업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및 영업비밀 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보안관리 체계 구축 미진
 - 기업간 거래시, 비밀유지계약(NDA) 관행 정착도 미흡
- 그간 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부처별로 추진중이나, 단발성에 그쳐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에 효과 미흡

※ 기술유출 사고 발생이유(1순위) : 임직원의 보안의식 부족 48.8% ('14. 중기청)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)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'국가핵심기술'보유기업의 CEO 등 임직원 및 보안담당자 대상으로 부처별 종합 교육계획 마련 (특허청, '16년 하반기)
 - 온라인을 통한 기술보호 교육* 상시제공 (산업부·특허청)

* 산업기술보호포털(www.is-portal.net),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(www.ipacademy.net)

- (대기업의 노하우 전수)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보안·교육·컨설팅 실시 등을 '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 협약 평가' 중 '기술보호 지원'항목의 실적으로 인정 (산업부·공정위)

※ 현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활동 실적 중 일부 사항(대기업이 협력사 특허출원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것만 인정)만을 동반성장지수평가 등에 반영중이나 '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보안 교육·상담·진단·컨설팅·인증' 등의 지원도 평가에 반영

- (비밀유지계약 관행 정착) 비밀유지계약서(NDA) 표준양식을 개발·보급 (특허청, '16년 하반기)하고,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 추진(공정위, '17년 상반기~)
- (공익광고 실시) 기술보호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업 공익광고 등 홍보 실시 (특허청 주관, 산업부·중기청 협조)

(4-4)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대비 보험지원 확대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법무부·특허청·중기청에서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소송비용을 '직접 지원'하고 있으나, 예산상 수혜 대상 및 금액이 한정
 - 지재권 소송보험*에 대한 간접지원 방식이 효율적이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확산에 한계가 있어 보험료 인하 유인 미흡
- * 국내기업의 지재권이 침해당했을때 '공격' 소송 제기비용과 침해 피소시 '방어' 소송비를 보장하는 보험(평균 2천만원 내외의 보험료 중 중소기업 70%, 중견기업 50% 지원)

□ 세부 추진과제

- (기술중소기업 지원 강화) Start-up기업 및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에 소송 보험료 지원 확대
- (소송보험 저변 확대) 시장 효율적 소송보험 확산을 위해 가입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보험료 인하 추진
- 소송비 지원만 아니라 사전 컨설팅비·조사비 등도 지원하는 보험상품 보급

1 법·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보호 및 처벌 강화

세부추진과제	시기	주관(협업)기관
1-1. 영업비밀 등 보호 강화		
· 영업비밀 구성요건 완화, 처벌대상 확대 및 벌금 상한액 상향	'16.4분기	특허청
·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	'16.4분기	특허청
·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	'16.4분기	특허청
· 양형기준 강화	'16.3분기	지재위(법무부)
· 증거제출의무 부과 및 불응시 제재효 도입	'16.4분기	특허청
1-2. 특허 권리화 신속지원 및 권리회복절차 간소화		
· 특허 우선심사 대상 확대	'16.5월	특허청
·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 신설	'17.3월	특허청
· 특허소송 증거 확대 및 제출의무 강화	'16.9월	특허청
1-3. 재판의 신속성 확보		
· 집중심리제 도입	'16.2분기	지재위, 법무부
· 법원에 기술전문인력 증원	-	지재위, 법무부
· 가처분사건 처리기한 법정화	-	지재위, 법무부
· 지식재산보호원이 기술사건 공공감정 서비스 제공	'16.하반기	특허청
1-4. 소송 前, 신속구제 절차 강화		
· 분쟁조정위원회 통합사무국 운영 및 위원회간 효율적 역할분담체계 구축방안 마련	'16.하반기	산업부, 중기청, 특허청
·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피신청인 응소 권고조항 신설	'17.상반기	공정위
· 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 성실의무 조항신설	'16.하반기	산업부, 중기청, 특허청
·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시정권고 제도 도입	'16.하반기	중기청
· 특허심판사건 Fast-Track 제도 운영	년중	특허청

2 신고활성화 및 기술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

세부추진과제	시기	주관(협업)기관
2-1. 상담과 신고를 연계한 초동대응 강화		
·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 확대 및 경찰청과 핫라인 신설	'16.상반기	중기청(경찰청)
· 기술보호울타리에 신고·제보란 신설 및 경찰청 연결	'16.상반기	중기청(경찰청)
· 통합상담·신고센터에서 신고포상금 적극 안내	'16.상반기	중기청(공정위)
2-2. 기술유출 범죄수사 전문성 및 협조체제 강화		
· 지방경찰청에 전문 수사인력 증강 배치	'17.상반기	경찰청
· 특허수사 자문관 채용	'16.상반기	법무부(검찰청)
· 형사사건 관할 집중 및 전담수사체계 구축	'16.하반기	법무부(검찰청)
· 지식재산보호원 권한 강화	'16.4분기	특허청
2-3. 기술자료 부당유용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		
· 원사업자 대상 기술자료 부당 제공 현장조사	'16.상반기	공정위
· 기술유용 혐의업체 집중조사	'16.하반기	공정위
· 기술유용 현장조사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	'16.하반기	공정위 (경찰청, 특허청)

3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

세부추진과제	시기	주관(협업)기관
3-1.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		
·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	'16.하반기	산업부
·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부여	'16.하반기	산업부
· M&A 신고대상 확대 검토	'16.하반기	산업부
3-2.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교육·현지보호 확대		
· 해외진출 사전교육	'16.하반기	특허청
· 해외 IP-DESK 확대	'16.하반기	특허청
· 소송보험 가입 지원	'16.하반기	특허청

4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

세부추진과제	시기	주관(협업)기관
4-1. 자체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		
· 보안관제 서비스 확대	'17.하반기	중기청
· 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	'16.하반기	미래부
4-2. 핵심기술인력 확보·유지환경 강화		
·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마련·홍보	'16.하반기	특허청
· 경업금지 표준매뉴얼 등 보급	'16.하반기	특허청
· 내일채움공제 지원 강화	'17.상반기	중기청(기재부)
· 인력의 부당 유인·채용 판단요건 완화	17.상반기	공정위
4-3. 중소기업인의 보안의식 제고		
· 보안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	'16.하반기	특허청 (산업부, 중기청)
· 동반성장지수, 공정거래협약 평가 반영	'16.하반기	산업부, 공정위
· 비밀유지계약서 표준양식 개발·보급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반영	'16.하반기 (17.상반기)	특허청(공정위)
· 공익광고 실시	'16.하반기	특허청 (산업부, 중기청)
4-4. 중소기업을 위한 분쟁 대비 보험지원 확대		
·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에 소송보험료 지원 확대	'16.하반기	특허청
· 소송보험 확산을 통해 보험료 인하	'17.하반기	특허청